

통일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공무직근로자(청소년 지도자) 채용 공고

통일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통일체험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전문성과 참신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 3. 17.

통일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장

1. 채용 분야 및 선발 인원

모집 분야	인원	담당 직무	근무 지역
청소년 지도자 (공무직)	0명	통일체험연수 프로그램 운영·진행 및 관련업무 협조·지원 등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남계로 408)

- 공무직근로자(공무원 신분이 아닌 국가기관 소속 근로자)
 -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및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처우

2. 지원 자격 요건

가. 공통 요건

- 학력·성별 제한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채용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원서접수 마감일('26.3.26.)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자
 -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3조(정년)에 해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까지 요건을 갖추 수 있는 경우 응시 가능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우대요건 * 원서접수일 기준, 증빙서류 필수 제출

- 청소년·교육·정치외교·통일·북한·역사·사회복지학과 졸업자 우대
 - * 관련학과는 졸업증명서 상 위 용어가 포함되어 있는 졸업학과를 인정
- 청소년지도사·상담사, 교원자격·사회복지사·평생교육사 자격 보유자
- 청소년 또는 통일 유관 분야 근무 경력자(사무행정 포함) 우대
- 컴퓨터 관련 자격증(워드1급, 컴활2급 이상만 해당) 보유자

다. 가산점

대상	주요내용	가점기준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	본인(만점의 10%) 가족(만점의 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소지자 (공고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본인(만점의 5%)

*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우대는 중복인정 불가

3. 근무 조건

- 근무기간: 2026. 4월 중부터 (단, 회계연도 기준으로 재계약 진행)
- 근무시간: 월~금요일 1일 8시간 09:00~18:00(기타 통일부 복무규정에 의함)
 - ※ 청소년수련활동 특성상 시간외 근무(주 12시간 이내) 있음
- 보수: 월 기본급 * 2,315,420원(급식비 16만원 포함)
 - ※ 4대 보험 적용, 시간외수당·상여금 등 별도 지급, 근로기준법에 의거 퇴직금 지급
- 숙소 제공: 직원숙소 이용 가능
 - ※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직원숙소 운영규정
- 출퇴근차량 제공(서울 ↔ 센터)
 - 월: 광화문(7:20 출발) → 마포구청(7:40) → 문산역(8:20) → 한반도통일미래센터
 - 금: 한반도통일미래센터(17:05 출발) → 문산역 → 마포구청 → 광화문역

4. 고용 신분 및 처우

- 공무원(무기계약직) 근로자로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근로기준법」 및 통일부의 관련 지침 등에 따라 처우

5. 원서 접수

- 지원서 접수: 온라인(전자우편)으로만 접수, 우편 제출본 인정 불가
 - 접수기간: 2026. 3. 17.(화) ~ 3. 26.(목) 18:00 *지원자 미달 시 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 주말 유선문의 불가, 메일 발송은 가능
 - 접수방법: 통일부·나라일터·한반도통일미래센터·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지원서 등 관련 서류를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이메일로 제출(아래 이메일 주소 참고)

- 센터 이메일 주소 : unifuture@korea.kr
- 메일 및 첨부(압축) 제목 :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지원서(성명)”로 통일하여 제출
- 파일 :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별지 서식 포함)의 경우 1개의 한글(hwp)파일로 제출

- 제출서류(필수)
 - 지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별지 제7호 서식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별지 제9호 서식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별지 제10호 서식
- 학위증명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 경력증명서의 경우, 사회보험 자격득실 관련 자격확인서 1부 별도 제출
 - *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등 증명서류가 없는 경우, 원서에 기재된 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6. 선발 절차

• 1차: 서류전형: 직무관련 경력 및 자격 등 평가

구분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교육이수	관련 자격증	직무경력	직무수행계획서	합계
평가점수	40	10	15	15	20	100

- 개인별로 제출한 지원서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서류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평가점수 총합 60점 이상 서류전형 합격

•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여, 평정요소별 평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근로계약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 면접전형 성적 차순위자를 예비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7. 채용 일정

• 1차 서류심사

- 발표: 2026. 4. 2.(목) * 합격자 개별 통보

• 2차 면접심사

- 면접방식: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 면접
- 일시·장소: 2026. 4. 7.(화) 14:00, 한반도통일미래센터

• 최종합격자 발표: 2026. 4. 9.(목) 예정

- * 합격자는 개별 통보 및 한반도통일미래센터 홈페이지 공고 예정
- * 서류접수, 면접 및 합격자 발표, 근무 시작 일시는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 신원조회 후 2026년 4월중 근무 시작 예정

8. 유의 사항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상기 채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않으며, 부당한 청탁을 하는 경우 해당 지원자를 사전 배제함을 알려드립니다.
- 온라인으로 지원하여 서류전형에 합격한 경우 지원서 및 관련서류 원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면 합격이 취소되거나 채용된 이후에도 채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지원자는 일정기간 동안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서류로 지원하는 경우만 해당)
- 최종합격자로 선정된 이후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즉시 근무 불가능시 면접시험 성적 차순위자에게 채용기회 부여)
- 최종합격하였더라도 실제 채용되기 전에는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서류심사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 면접전형 성적 차순위자를 예비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계약 이후 공무원근로자는 「근로기준법」과 「국민연금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등을 준용받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신원조사 의뢰 및 확인 등에 일정기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지원하셔야 하며, 지원 내용에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접수기간 동안 수정하여 다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기획운영팀 인사담당자(031-839-79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 원 서

1. 인적사항

성명	한글	(서명)	접수번호	※ 작성하지 말 것
	한자		생년월일	0000.00.00 (만 세)
현주소				
연락처	본인 휴대폰		비상연락처	E-mail
병역	군필여부		기타사항	
	최종계급			

2. 교육사항

전공	학위 종류	학위번호	학위취득일
00학	학사		0000.00.00

3. 경력사항

근무처 (부서)	근무기간	근무월수 (월)	직위(급)	주요업무 및 실적
1. 000 (00000팀)	20XX.X.X ~ 20XX.X.XX	XX개월		
2. 000 (00과)	20XX.X.X ~ 20XX.X.XX	XX개월		

【작성요령】

- ①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
- ② 경력기간은 연월일까지 계산
- ③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를 기재
- ④ 주요업무실적은 요약하여 30자 이내로 간략하면서 구체적으로 기재

4. 자격사항

자격증명	발급기관	취득일자	자격증명	발급기관	취득일자

5. 기타 실적

○ 기타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실적 및 자격증 등이 있을 경우 기재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지 원 자 : _____ (인)

자기소개서

1. 우리 센터에 지원한 동기 및 입사 후 실천하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해주시시오.

2. 지원한 분야에 필요한 전문성과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러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본인이 기울인 노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3.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상대방에게 성공적으로 설득했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4. 조직이나 단체에서 갈등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했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작성요령) 글씨크기 : 13, 줄간격 160%, A4 3매 이내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작성 자 : ○ ○ ○

직무수행계획서

- 지원하신 직무와 관련하여, 본인이 수행한 경력사항, 조직이나 활동에서의 역할, 역량 발휘, 활동결과 (주요성과) 등을 어떻게 직무에 적용할지 1,0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블라인드 채용 기준 준수를 위해 편견요인(출신지, 가족관계, 연령, 성별, 학교명) 제외)

2026년도 공무직근로자 채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통일부는 공무직 근로자 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지원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는 이용하지 않으며, 귀하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이의제기 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통해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침해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된 권익침해 구제방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채용 과정에서 본인확인, 입사 자격 확인 및 합격자 안내 등을 위해 사용합니다.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공무직 근로자 채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또한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필수 항목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성별, 현주소, 연락처(e-Mail, 자택전화, 휴대폰), 병역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자격사항, 자기소개서
선택 항목	없음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채용확정자의 서류는 근로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3년까지 보존하고, 탈락자의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반환 청구기간(채용절차 종료 후 180일)까지 보존합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에는 채용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지원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한반도통일미래센터장 귀하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 시행하는 공무원근로자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한반도통일미래센터가 실시하는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자료 진위 여부 검증 및 임용제한 사유 확인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6. . . .

응시자 성명: (서명)

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장 귀하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0000 공무직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25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026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채용권자 귀하

<별지 제10호>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p>1. <u>공직자로 재직 한 경험이 있는지</u>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p>	<p>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p>2. '<u>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u>'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해당</p>	<p>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p>3-1. 해당 부패행위로 <u>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u></p>	<p>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p>3-2.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u>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u>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p>	<p>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p>4-1. 해당 부패행위로 <u>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u>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p>	<p>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p>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u>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u></p>	<p>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p>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p>	<p>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p>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p>	<p>해당 <input type="checkbox"/></p>
<p>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p>	<p>해당 <input type="checkbox"/></p>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026 년 월 일

생년월일 . . .

지 원 자

(서명)

년 월 일